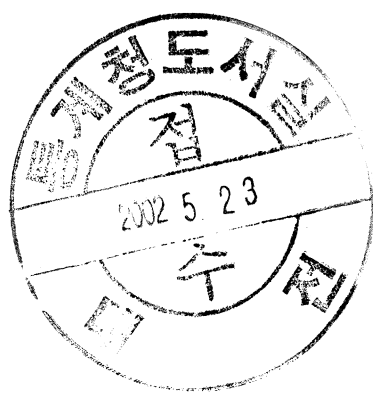


625.4637  
8145  
0.3

# 한국표준산업 및 직업분류

2000. 2



625.4637

통계기획국 통계기준과

# 총 목 차

1. 한국표준산업분류 .....	3
2. 한국표준직업분류 .....	81

# 한국표준산업분류

# 목 차

I. 표준산업분류개요 .....	7
1. 산업 및 산업활동의 정의 .....	7
2. 산업분류개념 .....	7
3. 분류목적 .....	8
4. 분류기준 .....	8
5. 통계단위 .....	9
6.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	10
II. 생산물(산출물)의 유형 .....	12
1. 개념 .....	12
2. 생산물의 유형 .....	12
3. 재화와 서비스의 차이 .....	14
III. 대분류별 내용 및 주요 개정내용 .....	15
IV. 세세분류별 변경내역 .....	48

# I. 표준산업분류개요

## 1. 산업 및 산업활동의 정의

-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동질성)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 이라 정의됨
  
- 산업(생산)활동
  - 산업(생산)활동이란 개별 사업주체가 “각종 생산요소(노동, 자본, 원료, 자원 및 조직 등)를 투입하여 제 3자에게 판매(또는 제공)할 특정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을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이라 정의되며,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가정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 ※ 참고

- 생산단위란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으로 특정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생산활동(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경영단위를 말한다.
- 산업활동의 동질성(유사성)이란 개별 생산주체들이 “제 3자에게 판매(또는 제공)할 특정 산출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려면 “일정한 생산조직”과 “일정한 생산요소, 생산기술 및 생산과정”등이 필요하며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조직 및 투입요소”의 성질이 적용된 분류기준상의 측면에서 동질성(유사성)을 갖는다면 이들의 생산활동은 동질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산업분류 개념

- 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한국표준업산업분류는 국내의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를 표준화한 것이다.

### 3. 분류목적

- 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집계, 분석하는데 통일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목적 분류다.
- 그러나 동 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 4.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과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 투입, 생산공정, 생산기술(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 참고

이러한 분류기준들은 개별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의 유형 (유사성-동질성 여부)을 구분(분류)하는데 적용되는 기본 관점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 5. 통계단위

### (1) 개념

통계단위란 생산활동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집계 및 분석 대상이 되는 생산단위를 말한다.

※ 통계단위는 관찰단위와 분석단위로 구분되며, 보고단위와는 다르다.

- 이러한 관찰(조사)단위는 산업활동과 사업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 산업활동과 사업장소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통계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
하나이상의 산업활동	기업집단	지역단위
	기업체 단위	
단일 산업활동	활동유형단위	사업체 단위

※ 기업집단은 분석단위임.

### (2) 사업체 단위의 정의(운영상의 정의)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사업체 단위는 광산, 공장, 상점, 음식점, 사무소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 참고

#### ① 사업체단위는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산업

활동과 사업장소의 동질성)하면서

- 생산 및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시장활동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자료수집 가능성) 단위임

② 따라서 산업활동 및 장소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

### (3) 기업체 단위의 정의

- 기업체 단위란 동일 자급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단일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 기업체단위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단위와 구분되며 재무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다.

## 6.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 (1) 생산단위의 활동 형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활동, 부차적 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 주된 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 가치(액)가 가장 큰 생산활동
- 부차적 활동이란 주된 산출물이외의 부차적 산출물의 생산활동
- 보조적 활동이란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업무 등과



같이 주된 활동과 부차 활동을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한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2) 산업결정방법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 이때의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울 때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단일사업체가 산업영역을 달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경우로서 종업원 수 및 시설면에서 그 주된 활동을 구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활동의 결합형태에 따라 산업결정 방법을 달리한다.
  - 벌목과 제재, 점토채취와 벽돌제조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단계의 활동에 따라 분류되며,
  - 제조한 신발과 구입한 신발의 판매, 빵 과자 제조와 설탕과자 제조 등과 같이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이들 활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된 산출물에 따라 분류된다.예를 들면 벌목한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일부만 제재하는 경우에는 벌목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벌목한 원목을 판매하지 않고 이를 직접 제재하는 경우에는 제재업으로 분류한다.

## (3)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 분류기준으로

적용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II. 생산물(산출물)의 유형

### 1. 개념

- 생산주체(단위)의 산업활동유형은 그 생산주체가 생산, 제공하는 주된 산출물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 따라서 개별 사업체가 생산하여 제 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는 주된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 산업활동이란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는 산출물(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이며, 각종 산업활동에 따른 산출물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산출물(재화)과 무형적인 산출물(비 시장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용역)**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 참고

주된 산출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사업체의 산업유형을 결정한다는 말은 그 주된 산출물의 생산활동의 특성(분류기준 고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산출물(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의 유의하여야 한다.

### 2. 생산물의 유형

사업체가 생산하는 산출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된다.

## (1) 재화(Goods)

### ○ 재화의 개념 및 유형

- 산업활동과정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유형재 만을 지칭한다. 단, 전기, 가스, 용수를 포함한다.
- 재화(유형재)는 이동재와 비 이동재(건축물)로 구분된다.

### ○ 재화의 생산활동이 분류된 산업

- 이동재 생산산업 :
  - (유형) 일차 생산품(미가공품) 생산 → 대분류 A 농림업, B 어업, C 광업
  - (유형) 일차 생산품의 가공품 생산 → 대분류 D 제조업
  - 무형 이동재 생산 →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비이동재(건축물) → F 건설업 부문

## 나. 서비스(Services)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 ○ 서비스의 개념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요소를 수요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유형 재)생산이외의 산업활동을 서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는바

### ○ 서비스의 특성

- 서비스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비스는 비 유형성, 비 저장성, 비 이동성, 비 저장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 특정 서비스는 그 내용(금융, 통신, 운수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들에 대한 수요주체(공공, 사회, 사업 및 개인 서비스 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임

## ○ 서비스의 구분과 관련 산업영역

### ① 수요 주체별 서비스의 구분

#### - 공공, 사회 서비스(공익성) :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 O 교육서비스업(80)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 R 기타 공공서비스산업(90, 91)

#### - 사업서비스

- 특정사업서비스 : 농업, 금융 및 운수관련 서비스 등(관련 산업별로 분산)
- 일반사업서비스 : M 사업서비스업

#### - 개인서비스 : R 소비용품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23, 93)

### ② 특정 목적 서비스(수요주체 불문)

- G. 도매 및 소매업
- H. 숙박 및 음식점업
- I. 운수업
- J. 통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L. 부동산 및 임대업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3. 재화와 서비스의 차이

○ 대부분의 산출물은 명확하게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제조활동과 유사한 기계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유형재의 생산활동이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면, 사진촬영, 처리 및 복사, 컴퓨터 테이프원판제작, 음식점의 식사 및 음료제공 등

- 재화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형재 및 비 유형재”, “저장성 및 비 저장성”, “이동성 및 비 이동성” 등의 기준은 모든 경우에 타당하거나, 실용적이거나,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특정 수요자가 요구할 때마다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그 제공되는 산출물(서비스)은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소매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 ※ 재화를 가공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수요자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생산되기도 하지만 제조업체의 생산물(유형재)은 일반적으로 도소매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것이 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생산활동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Ⅲ. 대분류별 내용 및 주요 개정내용

#### A 농업 및 임업(01~02)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 식재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1) 작물재배업

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 나) 여기에는 임업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되며,
- 다)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 시설재배

-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 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시설재배로 한정된다.

2) 축산업

-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번식·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와 애완용 동물의 사육관리 대리는 제외된다.

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한다.

4) 조정수 식재 관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 개인 및 사업체(농업 사업체 제외)를 대상으로 정원 및 공원의 조성에 관련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과
  - 농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5)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단,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된다.

## 나.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단,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경우는 농업으로 분류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주로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 나. 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임산물을 원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농업 및 임업으로 분류되나 별개의 제조공장 등을 설치하고 제조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제조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한다.  
단, 벌목과 목재가공을 일관공정으로 수행하는 경우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다. 농·임·수산업 관련조합은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22 경영 상담업”에 분류된다.

마.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제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과 같이 토목공사활동이 결합된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45126 조경공사업”에 분류된다.

바.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 활동은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에 분류된다.

### 3. 주요 개정내용

- 재배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소 및 화훼작물의 시설재배 등을 시설작물 재배업에 포함시켜 그 산업범위를 확대하였고,
- 식량작물 생산업(01110)에 분류되었던 사료작물의 재배활동을 기타작물 재배업(01140)으로 이동하였으며
- 식용 야생식물 및 식물성물질의 채취활동을 포괄하여 농업활동으로 조정함으로서 식용야생딸기, 견과, 송로 및 버섯의 채취만을 농업으로 분류했던 종전보다 그 채취대상을 확대조정
- 축산업내의 비중을 고려하여 양돈 및 가금 사육업을 세분류로 상향조정하고, 양잠 및 양봉업을 기타 축산업으로 통합하였다.

## B 어업(05)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가.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양식어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어업으로 분류되지만,

- 별도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가공활동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장형태의 가공선박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들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개구리 양식 활동은 “012 축산업”에 분류된다.

다. 고래 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및 개구리 포획은 “015 수렵업”에 분류된다.

라. 오락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88 기타 오락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 3. 주요 개정내용

- 기타 일반해면어업(구, 05119)을 해역별로 분산, 통합함으로써 분류 기준을 해역별로 단일화하였다.
- 일반어업(자연 생식되는 수산물의 채취)을 어로어업으로 명칭 변경

## C 광업(10~12)

### 1. 개요

-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광업 사업체는 광산단위로 분류하며 관리사무소의 주소지가 사업장소가 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은 “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제조업”
-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6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다. 상수도,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410 수도사업”
-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45110 지반조성공사업” 또는 “46112 토공사업”
- 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물탐사 및 지질조사 활동은 “74493 지질조사 및 탐사업”

### 3. 주요 개정내용

- 생산량이 거의 없는 원유, 천연가스 및 우라늄 광업을 석탄광업과 통합하여 단일 중분류로 조정하고
- 생산비중이 감소된 금속광업(텅스텐, 망간, 동, 몰리브덴)을 기타 금속광업(13209)에 통합 조정하였으며,
- 건설용 모래채취와 공업용 모래채취활동을 통합 조정하였다.

## D 제조업(15~37)

### 1.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 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 또는 어업으로 분류한다.

자.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차.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된다.

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3. 주요 개정내용

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가공공작기계제조업을 소분류로 상향조정.

나.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제조업, 반도체장비제조업, 액정표시장치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등을 분리 신설.

다. 결합생산이 일반적인 낙농제품제조업, 신발제조업, 도료제품제조업, 가정용전기 기기 제조업과 비중이 감소된 고공품제조업, 제면업 등의 세세분류 항목은 통합하였다.

라. 한편 세계적인 분류추세 및 새로운 산업경향을 반영하여 제조업영역에 분류되었던 산업용기계장비의 전문수리업을 서비스 산업영역 “92수리업”으로 이동시켰다.

##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 가.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난방·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증기·온수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수도사업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개인, 가정 및 사업체에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정유공장에서의 가스생산활동 (232)

나. 관개시설의 운영활동 (01429)

다. 하수시설의 운영활동 (90110)

라. 차량용 가스충전소 운영활동 (50402)

마. 배관이외의 방법(탱크로리 및 충전상태 등)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매 5171, 소매 5267)

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보관시설 운영 (6320)

## 3. 주요 개정내용

- 소분류 전기업 부문에서 송전 및 배전업을 신설.
- 수도사업 부문을 생활용수 공급업과 산업용수 공급업으로 세분.

## F 건설업(45~46)

### 1. 개 요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 (01410)
-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1022)
-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한다.
  - 다만,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43 또는 744)에 분류된다.
  - 다만,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701)
- 바. 선박 해체활동은 선박건조활동과 동일하게 분류 (3511 또는 3512)

## 3. 주요 개정내용

-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을 중분류로 구분하고, 토목 및 건물 축조관련 전문건설업을 전문직별 건설업에 통합.
- 전기 및 통신 공사업에 토목공사적 성격의 공사까지를 포함시켜 소분류로 상향조정.



## G 도매 및 소매업(50~52)

### 1. 정 의

- 도매 및 소매업이란 “구입한 각종 상품(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가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함
  - ※ 단,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판매활동과정에서 부수될 수 있음
  - ※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 2. 개 요

#### 가. 도매업

##### 1) 개요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사업체(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 ※ 단,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은 변형(가공)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2) 형 태

#### 가) 도매업의 유형

- ①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

- ②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 ③ 수출업자, 수입업자, 고물수집상
- ④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 등이 포함된다

나) 상품중개업

- ①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활동으로
- ②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포함된다.

다) 타산업과의 관계

- ①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의 판매, 차량소비용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는 “504: 자동차 연료 소매업”에 분류
- ②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 공급은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으로 분류
- ③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에 분류
- ④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토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
- ⑤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본다.

※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 ⑥ 현금거래 또는 선물거래 방식에 의하여 미래상품을 공급·중개하는 활동은 “67122 : 선물중개업”에 분류된다.
- ⑦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제품을 가공처리하여 재생용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37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에 분류된다.

#### 나.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 1) 소매업의 개요

가) 소매업이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개인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나)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라)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인터넷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무점포 판매)하기도 한다.

##### ※ 소매업의 특성

①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체에서 사용되는 광물, 원유, 산업용 화

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 ② 타이프라이터, 페인트 또는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 ③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 ④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설치 및 수리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 2) 소매업의 형태

###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등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따라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각종상품을 소매하는 인터넷 백화점 등은 “5281 :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

### 나) 전문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이 포함된다.

###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등의 무점포 판매가 포함된다.

#### 다. 타산업과의 관계

- 1)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 2)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소비자)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식품, 커튼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음식점 제외)의 경우에는 제조업(15~37)으로 분류된다.
- 3) 자동차, 이륜자동차(모터 사이클), 설상용 차량 및 그 부분품 판매(도·소매)와 차량 연료 소매(50)
- 4) 자동차이외의 각종 상품을 단체 및 산업사용자에게 주로 판매할 경우(51)
- 5)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구내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552)
- 6) 일반대중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7130)

#### 라. 주요 개정내용(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및 가정용품 수리업을 '92 수리업'으로 이동
- 무역업을 삭제하여 취급품목에 따라 구분
- 도매업에서 전문도매업을 보다 세분조정하고 상품종합도매업을 신설

- 소매업에서는 전자상거래업, 체인화편의점, 창고형매장 등 대형종합소매업 등을 신설

## H 숙박 및 음식점업(55)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 가. 숙박업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 철도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나. 음식점업

-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포함)
-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는 활동
-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 구내식당, 일반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

-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체인식 음식점, 대리점형태의 제과점 및 간이음식점 등이 있을 수 있다.
-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도시락 배달업소, 피자 주문 배달공급업소 등이 있을 수 있다.
-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 연회급식(catering service)

##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경우 “15496 도시락 및 식상용 조리식품 제조업
- 나.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식품의 판매활동 “52891 자동판매기 운영업”
-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운수활동에 결합된 침대차 또는 식당차의 운영 “6010 철도 운송업”
- 라.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7011 부동산 임대업”
- 마.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15 음·식료품 제조업”

바.接客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52 소매업”

사. 시간제로 운영되는 휴식시설(휴게텔, 산소방 등) “93129 기타 미  
용관련 서비스업”

### 3. 주요 개정내용

- 숙박업에서는 관광 및 여행자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숙박시설운  
영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세분
- 음식점업에서는 일반 식당업과 기타 식당업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더 세분

## I. 운수업(60~63)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과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 화물취급업, 창고업, 여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 이러한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  
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  
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  
행하지는 않는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92 : 수리업”에 분류되며,

- 1)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 항구에서의 선박, 비행장에서의 비행기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스에 분류되고,
- 2)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및 개조활동은 “35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 분류된다.

다. 도로, 철도, 항구, 비행장 등의 건설은 “4512 : 토목시설물 건설업”에 분류

라.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비의 종류에 따라 “71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해당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 3. 주요 개정내용

- 운수업과 통신업을 대분류에서 구분
- 운수업에서는 창고업과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을 소분류로 상향조정
- 장의차량 운영업을 화물운송업에서 여객운송업으로 이동
- 도로화물운송업을 관련법의 정비에 따라 세세분류를 통합화물운송
- 대행 및 대리업을 화물운송 주선업으로 통합하였다.
- 수상운수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었던 선박청소, 소독 및 구충활동 대리서비스는 “M. 사업서비스업”으로 이전

## J. 통신업(64)

### 1. 개요

#### 가. 우편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우체국의 우편사업 부문)

#### 나. 소포송달업

우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편지, 소포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꽃, 상품, 소형포장물 등을 직접 배달하는 퀵 배달서비스 또는 소포택배서비스활동 등이 포함된다.

#### 다. 전기 통신업

-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 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유·무선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회선의 임대 및 운영활동)

- 인터넷 등 컴퓨터 정보통신망(On-Line Access Network)운영
- 통신 및 방송을 전송 또는 중개하는 통신위성 및 통신지지국 운영활동과 미사일 유도 및 레이더대리 등의 통신서비스가 포함된다.

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는 “872 : 방송업”에 분류

### 2. 주요 개정내용

- 운수업과 통신업을 대분류에서 구분.
- 통신업에서는 소포택배의 개념을 소포송달업에 포함시켰으며,

- 전기통신업을 보다 세분(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별정통신업 등 신설)

## K. 금융 및 보험업(65~67)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가.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 나.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
- 노후 또는 퇴직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

####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정부이전 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의 소득결손 및 손실 등을 보상하는 활동은 “76500 : 사회보장행정”에 분류

나. 정부기관 및 사립복지기관이 정부이전지출과 자선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86 : 사회복지사업”에 분류

다. 운용리스는 “71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분류

라.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개인공제, 사업공제, 증권 및 선물거래소, 투자자문업,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등을 신설.

##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가. 부동산업(70)

- 1) 부동산(묘지 제외)의 개발분양공급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 2)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부동산 관리, 중개 및 감정 등의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 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71)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452 : 건물건설업”에 분류

나. 단기적인 숙박시설 임대 및 운영 “551 : 숙박업”에 분류

다.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에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대분류에서 구분
- 부동산업에서는 부동산 관리업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
- 임대업에서는 수상운수장비 임대업과 항공운수장비 임대업을 기타 운송장비임대업으로 통합하고,
- 개인 및 가정용품의 임대업부문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의류 임대업을 신설

## M. 사업 서비스업(72~75)

###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대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가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①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이며 장비와 원료는 핵심요소가 아니다. 전문 지식은 보통 학위를 통하여 취득된다.
- ② 컴퓨터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 자료처리, 데이터 베이스; 사회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①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으나, 최근 이 업무를 전문 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 ② 이 산업에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등 사무지원서비스, 신용조사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 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산업분야에 각각 분류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의 전문수리는 “92121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에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 ①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대분류에서 구분
- ② M 사업서비스업에서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신설하고 게임위주가 아닌 컴퓨터플라자 운영활동을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분류(예시)하였으며,
  -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구분류 : 74)은 전문지식의 활용정도에 따라 “74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75 :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중분류에서 구분하고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 지주회사, 제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광고매체판매, 상업용 사진촬영, 인테리어·제품·시각 디자인,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을 신설
    - 한편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경보시스템서비스, 문서작성, 텔레마케팅 등을 신설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 가. 공공행정 및 국방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 서비스 관리행정, 산업진흥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다.

#### 나. 사회보장행정

- 1)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기금조성 및 행정사무를 말하며,
- 2)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 행정이 포함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 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정부직제와 기능을 고려하여 세분하였다. 재정 및 경제정책, 환경, 보건 및 복지, 건설 및 운송, 통신관련 행정이 신설하고
- 치안행정이 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서 등으로 세분
-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업으로 보아 “85 보건업”으로 이동

## O. 교육 서비스업(80)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실업자와 장애자에 대한 직업 재활서비스는 “86291 : 직업 재활원”에 분류

나. 전문 체육인 양성교육기관을 제외한 시설없이 운동강습하는 서비스는 “88329 : 기타 경기 전문종사업”에 분류

다. 개인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교사는 “95000 : 가사 서비스업”에 분류

라.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 3. 주요 개정내용

- 상업 및 정보산업고등학교 등을 정규교육기관에서 신설하고,
- 학원을 컴퓨터 학원, 운전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예술학원 등으로 세분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활동이 포함된다.

#### 가. 의료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나. 수의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다. 사회복지사업

정부 또는 비 정부기관에서 조성한 이전지출기금 또는 자선기금에 의하여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수용복지기구를 말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치과 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교정장치의 생산활동(33192)

나. 사회보장행정사무(76500)

### 3. 주요 개정내용

- ① 보건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중분류에서 구분하고
- ②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공공의료보건업, 구급차서비스업을 신설하고 방사선진단 및 병리실험 의원을 기타의료업에서 의원으로 이동
- ③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수용복지시설을 관련법상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였고, 법률구조기관, 자원봉사단체, 무료상설급식소를 구체적으로 분류에 명시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 뉴스제공,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음반 출판은 “2213 :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에 분류

나. 오디오 및 비디오 원판(영화필름제외)의 복제는 “2230 : 기록매체 복제업”에 분류

다. 영화제작 설비 임대는 “71290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분류

라. 건물·설비의 청소 및 소독은 “7592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에 분류

마. 영화·방송용 이외의 사진촬영 및 필름처리는 “7491 : 사진촬영 및 처리업”에 분류

바. 연예인 매니저업은 “75995 :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에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 구분류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두 개의 대분류로 구분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은 영화, 방송 및 공연예술산업과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으로 중분류에서 구분하였고
  - 영화, 방송 및 공연예술산업에서는 만화영화제작, 비디오물 감상실, 공연기획업을 신설하였으며,
  - 유선방송, 공연단체 및 자영 예술가를 세분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에서는 노래방, 컴퓨터게임방 등을 신설하고
  - 무도장운영업과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을 기타 오락산업부문으로 이동

##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0~93)

###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원단체,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의 수리활동, 세탁 및 개인대상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하수·분뇨 처리, 폐기물의 수집처리, 공공장소 청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나. 회원단체(91)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

다. 수리업(92)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정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라. 기타 서비스업(93)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농작물 소득 및 방제는 “0142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나. 건물·설비의 청소 및 소독은 “7592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에 분류

다.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95000 : 가사 서비스업”에 분류

라. 회원단체에 의한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마.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

## 3. 주요 개정내용

- 제조업과 도소매 및 사업서비스업에 분산되었던 산업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개인 및 소비용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등의 정상적 수리업을 이 분류영역으로 이동시켜 중분류로 신설하였고,

- 폐기물처리업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을 지정외와 지정으로 분류하였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
- 회원단체에서는 시민운동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을 신설
- 개인서비스업에서는 마사지업 및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등을 신설하고 결혼상담업 및 수화물보관업은 기타 서비스업에 통합

### S. 가사 서비스업(95)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개인가정내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의 산업활동이 분류.

※ 변동사항 없음사항

### T. 국제 및 외국기관(99)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분류.

※ 변동사항 없음사항

#### IV. 세세분류별 변경내역(구·신항목연계표)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01111	보통작물 생산업	· 식량작물 재배 · 사료작물재배	01110 01140*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01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작물 생 산업	· 노지재배	01140*	기타 작물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생산업	· 시설재배 · 노지재배 · 시설재배	01159* 01121* 01152*	기타 시설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 배업
01122	화훼작물 생산업	· 시설재배 · 노지재배	01152* 0112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01124	멜론 및 기타 초본성 과실 생산 업	· 노지재배 · 시설재배	01121* 01152*	채소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31	과실 생산업	· 시설재배 · 노지재배	01152* 01131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 및 향신작물 생산업	· 시설재배 · 노지재배	01159* 01132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0	시설작물 생산업	· 기타 시설작물 재배 · 콩나물 재배	01159* 01151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01211	낙농업	· 젖양 사육 · 젖소 사육	01291* 01211	말 및 양 사육업 젖소 사육업
01213	말 및 양 사육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22	양계업		01231*	양계업
01223	기타 가금 사육업		01239*	기타 가금 사육업
01224	양봉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01225	가금 부화업	· 병아리 부화업 · 기타 가금 부 화업	01231* 01239*	양계업 기타 가금 사육업
01226	양잠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01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축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01421	관개시설 운영업		01429*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01423	원에 관련 서비스업	·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관련 서 비스 · 기타 서비스	01422* 01429*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 리장 운영업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01429	달리분류되지않은 작물생산 관 련 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	01429*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01430	축산관련 서비스업	·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관련 서 비스	01422*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 리장 운영업
02013	야생 임산물 채취업	· 비식용 야생임 산물 채취	02013	야생 임산물 채취업
10200	갈탄 광업		10120*	갈탄 및 토탄 광업
10300	토탄 광업		10120*	갈탄 및 토탄 광업
13201	텅스텐 광업		11209*	기타 비철금속광업
13202	망간 광업		11209*	기타 비철금속광업
13204	동 광업		11209*	기타 비철금속광업
13206	폴리브덴 광업		11209*	기타 비철금속광업
13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광 업		11209*	기타 비철금속광업
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2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
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12123*	모래 및 자갈채취업
14291	활석광업		12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조업
14292	장석 및 규조토 광업		12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조업
14293	흑연 광업		12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조업
14299	달리분류되지않은 별개 이외의 광업 및 채석업		12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조업
15111	도축업		15111*	도축업
15112	가금 도살업		15111*	도축업
1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기타 육지동물 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육지동물 식용 지방 용출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 장처리업
			15141*	동식물성유지제조업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 제식품제조업
15123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 제식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 제식품제조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제조업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제조 업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제조 업
15131	과실 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 과실의 기타 가공품 제조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토마토 및 채소의 기타 가공품 제조	15139	기타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2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 과실 절임식품 제조업 ·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2* 15133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 김치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
15139	달리분류되지않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기타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채소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2* 15139*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유지제조업
15201	액상 시유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15202	연유, 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15203	발효유 제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15205	버터 및 치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15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낙농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제조업
15311	곡물 도정업		15311*	곡물도정업
15312	곡물 제분업		15312*	곡물제분업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업	15319* 15496*	기타 곡물가공품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조리식품 제조업
15319	달리분류되지않은 곡물 가공업	· 출기, 뿌리, 피경의 조분 제조	15312*	곡물제분업
		· 기타 곡물 가공업	15319*	기타 곡물가공품제조업
15411	빵 제조업	· 기타 빵류 제조	15411	빵류제조업
		· 피자, 만두 등 식사용 조리식품	15496*	도시락 및 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15419	달리분류되지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 기타 빵 및 곡분과자 제조	15413	곡분과자제조업
		· 젤라틴 캡슐 제조업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15421	원당 제조업		15420*	설탕제조업
15422	설탕 정제업		15420*	설탕제조업
15429	달리분류되지않은 설탕 제조업		15420*	설탕제조업
15451	천연조미제품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15454*	식품첨가물제조업
15459	달리분류되지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5454*	식품첨가물제조업
15481	임가공 도정업		15311*	곡물도정업
15482	임가공 제분업		15312*	곡물제분업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지동물고기 냉동업</li> <li>· 수산동물고기 냉동업</li> <li>· 식용 해조류 냉동업</li> <li>· 과실 냉동업</li> <li>· 채소 냉동업</li> <li>· 기타 냉동업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li> </ul>	15119* 기타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3*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15125* 식용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2*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9* 기타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의 액즙</li> <li>· 동물고기에 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li> <li>· 기타 조제건강 식품</li> </ul>	15131 과실 및 채소주스제조업 15497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15499 그외 기타 식료품제조업	
15498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25*	식용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15514	가향조제주 제조업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15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제조업
15523	과실 발효주 제조업		1552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9	달리분류되지않은 발효주 제조업		1552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42	탄산음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 생수 생산</li> <li>· 천연광수, 천연탄산수 및 조제음료 제조</li> </ul>	15542 생수생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15549	달리분류되지않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음료 제조업
17112	면 및 마 방적업	· 면 방적업 · 마 방적업	17102 17109*	면방적업 기타 방적업
17115	연사 제조 및 기타 방적업	· 연사 제조 및 실 가공업 · 기타 방적업	17105 17109*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 기타 방적업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 화학섬유 직물 직조업 · 견직물 직조업	17201 17204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견직물제조업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 면직물 직조업 · 마직물 직조업	17202 17209*	면직물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제조업
17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직조업		1720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93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7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93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7292	제면업		17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17299	달리분류되지않은 별개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17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21*	편조의복 제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7321*	편조의복 제조업
17305	장갑 편조업		17329*	기타 편조제품제조업
17309	달리분류되지않은 편조업		17329*	기타 편조제품제조업
18101	남자용 양복 제조업		18111*	남자용 정장제조업
18102	여자용 양장 제조업		18112*	여자용 정장제조업
18103	소아용 외의 제조업	· 소년용 정장제조업 · 소녀용 정장제조업 · 소년, 소녀용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 기타 외의 제조업 · 유아용 외의 제조업	18111* 18112* 18141* 18142* 18144*	남자용 정장제조업 여자용 정장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외복제조업 유아용외복 제조업
1810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	·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8141*	셔츠 및 체육복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814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8105	내의 제조업	· 기타 내의제조업 · 유아용 내의 제조업	18120	내의 제조업
			18144*	유아용 의복제조업
18108	모자 및 장갑 제조업	· 모자 제조업 · 장갑 제조업	18151	모자 제조업
			18152	장갑 제조업
18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의복 제조업	·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4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5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9121	가방 제조업		19211*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19122	핸드백 제조업		19212*	핸드백 및 지갑제조업
19123	지갑 제조업		19212*	핸드백 및 지갑제조업
1912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9211*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19125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19290*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19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290*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19202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19203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1920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19205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19206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19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신발 제조업		19302*	기타 신발제조업
20102	가공목재 생산업		20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제재목 제조업
20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제재목 제조업
20211	박판 제조업		20211*	단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제조업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1*	단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제조업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패널 제조업		20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2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0231	통 제조업		20239*	기타 건축용 목제품제조업
20232	목재 절목상자 제조업		20239*	기타 건축용 목제품제조업
20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목재 용기 제조업	· 갈판류 및 적재용 판 제조업 · 기타 목재 용기 제조업	20231	목재간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20239*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용기 제조업
20292	덧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20242*	덧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제조업
20293	조물세공 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242*	덧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제조업
20297	목함 제조업	· 장식용 목함 제조 · 기타 목함 제조	20293	장식용목제품 제조업
			20299	그외 기타 목제품제조업
20298	고공품 제조업		20242*	덧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제조업
21012	한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9	달리분류되지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21	골판지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 골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상자 및 관련제품 제조업	2121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1219*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21029	달리분류되지않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219*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21091	문구용지 제조업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1096	자동기록 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7	종이라벨 제조업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1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종이접시, 종이컵 등 식품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1213*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9*	기타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업		22219*	기타 인쇄업
22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상업 인쇄업		22219*	기타 인쇄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분류되지않는 기록매체 복제업		22300*	기록매체 복제업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29* 24131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3	유연제 및 염료 엑스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초화합물 제조업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그외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19 2412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21	질소질 비료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5	도료관련 제품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6	옷칠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31	의료 화합물 제조업		242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4232	항생 의약품질 제조업		2421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39	달리분류되지않은 의약품, 의약품 화학물 및 생약제 제조업	·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그외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24222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242	비누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업	· 계면활성제 제조업 · 기타 세제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4	치약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5	화장품 제조업		24333*	화장품 제조업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업		243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424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 합성글리세린 제조업 · 구강 위생용품 제조업 · 실내 가향제 및 분향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333*	화장품 제조업
			243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2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 기타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 마그네틱 카드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2	비경화 가황고무판, 호스 및 벨트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25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5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91*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31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 ·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 건축용 조립구성품 제조	25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22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32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9	달리분류되지않은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포장용 용기 제조 · 기타 강화플라스틱제품 제조	25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43	플라스틱 조립 건구 제조업		25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5249	달리분류되지않은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 산업용 가공품 · 가정용 가공품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9	달리분류되지않은 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 제조업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생산 · 기타 성형 제품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25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 판유리 제조업 ·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6102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 판유리 가공품 제조 · 기타 1차유리 가공품 제조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911	토기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 내화 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29	달리분류되지않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91	석면제품 제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 아스콘 제조업 · 아스팔트 성형 제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6922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26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조업		2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111	제철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99*	그외 기타 철강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7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철강산업	· 절단 가공강재 생산 · 기타 철강산업	27191* 27199*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그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연 및 아연 2차정련 · 기타 비철금속 2차정련	27213* 27219*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강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112	건물 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기타 구조금속 제품 제조 · 이동식 금속사다리 제조	28119 2899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123	압축가스 운반용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8924	금속용접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 가공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처리업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 · 기타 금속처리	28924 28929*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기타 금속처리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8939	달리분류되지않은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3*	수공구 제조업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금속 표시판 제조 ·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엔진 및 터빈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액체용 펌프 제조 ·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41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2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 장치 제조 ·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2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기 제조업	· 기체 여과기 제조 · 액체 여과기 제조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제조업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 원심분리기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 ·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기계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29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51	낙농품 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52	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53	식품 산업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5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95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6	산업용 열식 건조기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7	원심 의류탈수기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0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293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02	가정용 세탁기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19	달리분류되지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0021	타자기 제조업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0022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00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사무, 계산및회계용기계 제조업		30029*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	3199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인터폰(모니터 불문) 제조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1906	산업용 접시세척기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32101	전자관 제조업	· 기타 전자관 제조업 ·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기타 전자직접회로 제조 · 칩내장카드 제조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기타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 · 통신위성 제조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컴퓨터용 모니터 제조 · 기타 방송 수신기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 요법기기 제조업	· 방사선장치 제조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	33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21	항행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4*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3214*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장치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33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레이더 및 항행용무선기기 · 기타 정밀기기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3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 TV카메라 및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 · 가정용 캠코더 제조 · 기타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205	사진실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3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액정 디바이스 제조 · 기타 광학기기 제조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4102	일반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차량 제조 ·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차량 제조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4103	특장차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4201	차체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 자동차엔진용 부품 제조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5112	목선건조 및 수리업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5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 항해용 건조 · 비 항해용 건조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5119	기타 선박 건조업
			35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5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5204	기계식 교통통제기 제조업		35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5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5301	항공기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항공기 보조장치 제조 · 항공기 부품 제조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 · 기타 목재 가구 제조	361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 ·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 · 기타 내장가구 제조	361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611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36119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6105	등가구 제조업		361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6106	플라스틱 가구 제조업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61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구 제조업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 피아노 제조 ·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	36921	피아노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23	건반 관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24	관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25	타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29	달리분류되지않은 악기 제조업		36929*	기타 악기 제조업
36932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제조업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낚시 및 기타 수렵용구 제조 · 궁도장비 제조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9	달리분류되지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2*	장난감 제조업
36943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2*	장난감 제조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3697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6957	전사 처리업		3697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6958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91*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59	달리분류되지않은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91*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91	유모차 제조업		3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말채찍 제조 · 우산 및 지팡이 제조	19290 36992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6997	보온용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3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6999	달리분류되지않는 기타 제조업		36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7101	고철 가공처리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2	페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40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업	· 송전업 · 배전 및 판매업	40121 40122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0*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	· 가스 제조 및 공급업 · 가스 저장소 운영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40200*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5102	토공사 및 정지 공사업	· 지반조성 공사업 · 토공사업	45110* 46112*	지반조성 공사업 토 공사업
45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지반조성 공사업	· 지반조성 공사업 · 토공사업	45110* 46112*	지반조성 공사업 토 공사업
45212	주택 도급 건설업	· 단독 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	452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아파트 건설	45212	아파트 건설업
45221	도로건설 및 포장 공사업	· 도로 건설 · 도로 포장 공사	45121 46113	도로 건설업 포장공사업
45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철도 궤도 공사	45122 46114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철도궤도 전문 공사업
45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 기타 수로, 댐 및 급배수 시설 공사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 · 준설 공사	45123 46119 46119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45229	달리분류되지않은 토목 건설업	· 조경 공사 ·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 · 토목관련 전기 공사 · 토목관련 통신 공사	45126 45129 46311 46321	조경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일반 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		46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5304	방수, 방음 및 내화 공사업	· 방음 및 내화 공사업 · 방수공사	46202 46491*	방음 및 내화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5306	환경위생 처리기기 설치 공사업		46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5307	울타리, 난간 및 관련 금속구조물 설치 공사업		46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6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5403	미장 및 타일 공사업		46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5405	도배 및 실내장식 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5406	내장 목공사업		46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50110	자동차 도매업	· 자동차 신상품 · 중고자동차 도매	50110* 50120*	자동차 신상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21	자동차 신상품소매업		50110*	자동차 신상품 판매업
50122	중고자동차 소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503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 · 자동차 중고 타이어 및 튜브 판매	502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0302	자동차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내장품 판매 · 자동차 중고 내장품 판매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0303	자동차 신부품 판매업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4	자동차 중고부품 판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0401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 판매업	· 이륜 자동차 및 부품 도매 · 이륜 자동차 및 부품 소매	50301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51104	무역 중개업	· 종합상품 무역 중개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상품중개업	· 상품종합중개 · 기타 상품중개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109	기타 상품 중개업
51211	곡물 및 종자 도매업	· 곡물 도매 · 종자 도매	51201	곡물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 묘목 도매 · 묘목도매 · 기타 화초 및 산식물 도매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1222	고기 도매업	· 도축된 고기를 가공한 포장육 도매 · 기타 도축고기 도매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51312	육류 도매업
51227	조미, 향신 및 조제식품 도매업	· 육류가공식품 도매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 · 낙농품 도매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1324	낙농품 도매업
			51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담배 도매업	51319	기타 비가공식품 도매업
			51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333	담배 도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51311	가정용 섬유, 사 및 직물제품 도매업	·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 · 커튼 및 침구 용품 도매 ·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도매 ·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도매	51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51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51312	외의 도매업		51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51313	셔츠 및 내의 도매업	· 셔츠 도매 · 유아용 의류 도매 · 내의 도매	51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51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51415	내의 도매업
5131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 섬유 제품, 의복 및 신발도매업	· 의복 액세서리 도매	51417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51323	가정용 철물, 식탁주방용 기기 및 용품 도매업		51442*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 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5	악기 및 레코드 도매업	· 음반 및 비디 오물 도매 · 악기 도매	5147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472	악기 도매업
51327	가정용 요업제품 및 목제품 도 매업		51442*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 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41	종이 및 종이제품 도매업	· 기타 종이제품 도매 · 원지, 판지 및 그 제품 도매	51461	종이제품 도매업
			51739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 업
51422	금속관 도매업		51602*	금속관,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3	금속관재 도매업		51602*	금속관,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4	금속선 및 그 제품 도매업		51602*	금속관,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금속광물 및 1차금속제품 도매업		51602*	금속관,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32	석회 및 시멘트 도매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3	골재 도매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6	일반철물, 수공구 및 난방장치 도매업	· 배관 및 냉난 방 장치 도매 · 철물 및 수공 구 도매	51521	배관 및 냉·난방 장치 도매업
			515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1437	조립식 건축물 및 구조재 도매 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재료, 철 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51493	비료 도매업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	농약 도매업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6	방직용 섬유, 사 및 직물 도매업	·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 · 직물 도매	51732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51733	직물 도매업
51501	일반 목적용기계 및 장비도매업		518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5	사무용 기계장비 도매업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매 · 사무용 기계장비 도매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
			51892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509	달리분류되지않은 산업용 기계 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 ·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 ·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	518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895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518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911	종합 무역업		51910*	상품 종합 도매업
51991	상품 연쇄화 사업	· 상품 종합 연쇄화 사업	51910	상품 종합 도매업
51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 · 기타 상품 전문 도매	51910*	상품 종합 도매업
			51990	그외 기타 도매업
52110	슈퍼마켓	· 3000㎡ 이상인 슈퍼마켓 · 165㎡ ~ 3000㎡ 미만인 슈퍼마켓	52119*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21	슈퍼마켓
5219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합소매업	· 3000㎡ 이상인 대형종합소매업 · 편의점 운영업 · 165㎡ 미만인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3000㎡ 미만인 비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19*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52122	체인화 편의점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52204	채소 소매업		52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05	과실 소매업		52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2207	식품종합 소매업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52209	달리분류되지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전문 소매 · 기타 식품 소 매 · 음료 소매업	52216	건강 보조식품 도매업
			52219	기타 식품 소매업
			52221	음료 소매업
52321	섬유 및 직물 소매업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 액세 서리 소매업
52322	내의 소매업	· 유아용 의류 소매 · 내의 소매	52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52415	내의 소매업
52323	외의 소매업	· 한복 및 개량 한복 소매 · 남녀용 정장 소매 · 셔츠 및 기타 외의 소매	52412	한복 소매업
			52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52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52325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 액세 서리 소매업
52329	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 액세 서리 소매업
52332	가정용 전기 기기, 영상 및 음 향장비 소매업	· 가전제품 소매  · 통신기기 소매	52511	가전제품 소매업
			52514	통신기기 소매업
52337	등세공품 및 기타 목제품 소매 업		5253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233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소매업		5253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2342	페인트 및 유리제품 소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 자재 소매업
52349	달리분류되지않은 철물, 페인 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 자재 소매업
52353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 기기 소 매업	· 컴퓨터 및 소 프트웨어 소매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소매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2	사무용 기기 소매업
52355	사진,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 사진기 및 사 진용품 소매 ·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635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523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비식용 신품 일반소매업	· 화초 및 산식 물 소매	526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5269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소매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소매업
52402	중고서적 소매업		52709*	기타 중고품 소매업
52403	저당물 판매업		52709*	기타 중고품 소매업
52409	달리분류되지않은 중고품 일반 소매업	· 중고 가전제품 소매 · 기타 중고품 소매	5270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52709*	기타 중고품 소매업
52510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 기타 통신 판매업	52811	전자 상거래업
			52812	기타 통신 판매업
525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특수판매업	· 방문 판매 ·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	52893	방문판매업
			528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2602	철물 및 가정용 기기 수리업		92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2605	자전거 수리업		92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26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5103	하숙업	·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55104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업	· 기타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91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55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숙박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 기타 관광 및 여행자 숙박시설 운영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215	음식 출장 조달업	· 기관구내 식당 운영 · 정식류를 제공하는 기타 일반 식당	55215	기관 구내식당 운영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55216	자급식 음식점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55217	간이체인 음식점	· 피자 및 햄버거 전문점	55221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그외 기타 식당운영 · 기타 간이 체인 음식점	5522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5219	달리분류되지않은 식당업	· 이동식 식당운영	55223	이동 음식점업
55221	일반유흥 주점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22	무도 유흥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23	한국식 유흥 주점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24	극장식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25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업	· 무도시설 없는 주점 · 무도시설 갖춘 주점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32	다방업		55242*	차집
55239	달리분류되지않은 다과점업		55242*	차집
60232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	· 기타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60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3	일반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업	· 기타 일반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60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4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	· 기타 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60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1201	내륙수상 여객 운송업	· 기타 내륙수상 여객 운송 · 항만내 여객운송	61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1203*	항만내 운송업
61202	내륙수상 화물 운송업	· 기타 내륙수상 화물 운송 · 항만내 화물운송	6120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61203*	항만내 운송업
62201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2202	항공기 임대사업(조종사 딸린)		62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3043	선박 청소업	· 선박 소독 및 구충서비스	75921*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선박청소서비스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63044	선박 구난업		63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49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 유지 서비스업		63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52	항공기 지상 관리 서비스업		63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59	달리분류되지않은 항공운수 유지서비스업		63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61	여행사업	· 일반 및 국제 여행사 · 국내여행사	63311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63312	국내 여행사업
63091	화물운송 대행업		63991*	화물 운송 주선업
63092	화물중개 및 대리업		63991*	화물 운송 주선업
63093	선박 및 항공기 중개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4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 화물포장 · 화물검수	63992 63999*	화물 포장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4201	유선 전신.전화업	· 전기통신 회선 설비 임대 · 기타 유선전신.전화	64211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64219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64202	무선전신.전화업	· 무선전화 · 기타 무선전신.전화	64221 64229	무선 전화업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64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통신업	· 별정통신 · 기타 전기통신	64291 64299	별정 통신업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59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	· 할부금융 · 기타 여신금융	65922 65929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 금융업
66020	연금 및 공제업	· 개인공제 · 사업공제 · 연금	66021 66022 66023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66031	상해보험업		66031*	손해 보험업
66032	손해보험업		66031*	손해 보험업
67110	금융시장 관리업	· 증권 및 선물 거래소 · 증권 및 선물 거래소 이외	67111	증권 및 선물 거래소
			67119	기타 금융시장 관리업
67120	증권거래업	· 증권 중개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	67121 67123	증권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67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 투자 자문 ·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	67192	투자 자문업
			67199	그외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70201	부동산 중개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70203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71119	달리분류되지않은 육상운수 장비 임대업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120	수상운수장비 임대업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130	항공운수장비 임대업		7112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210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9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301	종합물품 임대업		7130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2	서적 및 기타 기록물 임대업	· 비디오테이프 및 음반 임대 · 서적 임대	71301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1302	서적 임대업
71304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용품 임대업	· 연극 및 영화 장비 및 기타 용품 임대 · 의상임대	71290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304	의류 임대업
71305	가정용 가구 및 기기 임대업		7130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의류 임대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	71304	의류 임대업
			7130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220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자료처리 · 컴퓨터시설 관리	72310	자료 처리업
			72320	컴퓨터 시설 관리업
73102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 연구 개발업	· 생물학 연구개발	7310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농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	73102	농학 연구 개발업
73201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경제학 연구 개발 · 기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73201* 73209*	경제학 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3202	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 경제학 연구 개발 · 기타 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73201* 73209*	경제학 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14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	· 경영상담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 · 지주회사	74222 74223 74230	경영상담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지주회사
74212	건축관련 기술 서비스업	· 기타 건축관련 기술 서비스 · 제도	74311 7449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제도업
74213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 기타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74312 74321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4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9*	가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5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743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6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9	달리분류되지않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 지도제작, 일기예보 서비스	74329 7449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외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물질검사 · 기타 검사	74411 74412	물질 성분 검사업 건축물 및 제품 검사업
74301	광고 대행업	· 생활정보지 등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 · 기타 광고대행업 · 광고매체 판매	22123 74510 74592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광고 대행업 광고매체 판매업
74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광고업	· 기타 광고업	74599	그외 기타 광고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74922	경호 및 경비업	· 경비업 · 정보시스템 서비스	75912 75913	경비업 정보시스템 서비스업
74931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75921*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74933	산업설비 청소업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74941	사진 촬영업	· 인물사진, 행사비디오 촬영 · 상업 사진 촬영	74911 74912	인물 사진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74991	패션 디자인업	· 인테리어 디자인 · 제품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기타 디자인	74601 74602 74603 746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97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 번역 및 통역 · 문서작성 · 텔레마케팅 · 복사	74991 75941* 75942 75943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복사업
74999	달리분류되지않은 별게이외의 사업관련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문서편집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74999 75941*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12	중앙종합행정	· 최고집행기관 및 관련 자문기구 · 재정 및 경제 정책 행정 · 기타 중앙종합 행정	76112 76114 76119	중앙 최고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75129	달리분류되지않은 사회서비스 사업관리행정	· 환경 행정 · 보건 및 복지 행정 · 기타 사회서비스 사업관리 행정 · 보건소	76213 76214 76219 85130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공중 보건 의료업
75139	달리분류되지않은 노동 및 산업 진흥행정	· 건설 및 운송 행정 · 통신 행정 · 기타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76223 76224 76229	건설 및 운송 행정 통신 행정 기타 산업진흥 행정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75230	공공질서 및 치안행정	· 법원 · 검찰 · 교도기관 · 경찰 · 소방서 ·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76401 76402 76403 76404 76405 76409	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서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0222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 상업 및 정보 산업 고등학교 · 공업 고등학교 ·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80221 80222 80229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80904	전문 강습소	· 컴퓨터 학원 ·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 운전학원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예술학원	80911 80919 80921 80929 80992	컴퓨터 학원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운전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예술 학원
80905	일반강습소	· 일반 입시학원 · 언어학원 · 방문 및 통신 교육학원 · 용변 및 숙독 학원	80931 80932 80933 80999	일반 입시 학원 언어 학원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09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기 관	· 사회교육시설  · 기타 교육기관	80991 80999	사회교육시설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5111	일반병원	· 종합병원 · 기타 일반병원	85111 85112	종합 병원 일반 병원
85192	유사 의료업	· 치과기공소  · 기타 유사 의 료업	33192 85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 기 제조업 유사 의료업
851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의료업	· 구급차서비스 · 기타 의료 서 비스	85193 85199	구급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의료업
85312	성인 수용복지시설	· 노인수용복지 시설 · 부녀자수용복 지시설	86110 86131	노인 수용 복지시설 아동 및 부녀자 수용 복지시설
85313	장애인 수용복지시설	· 신체 장애인 수용복지시설	86121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정신지체자 수용복지시설	86122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 복지시설
85319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용복지시설	·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 복지시설 · 불량인 수용복지시설	86122 86139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 복지시설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85321	비수용 아동복지시설	· 보육시설 · 입양알선 및 청소년 선도기관	86210 86299*	보육 시설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85322	재난 구호시설		86299*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85329	달리분류되지않은 비수용복지시설		86299*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90011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건축 폐기물 처리업	90211 90221 90223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건축폐기물 처리업
90012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212 9022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91914	천도교		91914*	민족종교 단체
91919	달리분류되지않은 종교단체	· 민족종교 · 기타 종교	91914* 91919	민족종교 단체 기타 종교 단체
9199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회원단체	· 환경운동단체 · 기타 시민운동 단체 · 기타 회원단체	91931 91939 91990	환경운동 단체 기타 시민운동 단체 그외 기타 회원 단체
92111	일반영화 제작업	·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 · 만화영화 제작	87111 87112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만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92112	광고영화 제작업		87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92120	영화상영업	· 기타 영화 상영 · 비디오물 감상실	87141 87142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92133	유선 방송업	· 방송 프로그램 공급 ·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 위성방송	87221 87222 87223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 방송업
92142	연예단체	· 연극 단체	87321*	연극단체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무용 및 음악 단체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 기타 공연단체	87329*	기타 공연단체
92143	자영 예술가	· 공연예술가	87331	공연 예술가
		· 비공연 예술가	87332	비공연 예술가
92149	달리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 공연 기획업	87341	공연 기획업
		· 기타 공연관련 산업(무대장치 포함)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92193	전자오락실 운영업	· 전자게임장 운 영	88911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	8891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노래방 운영	88913	노래방 운영업
92194	공연장 운영업	· 인형극 단체	87321*	연극단체
		· 서커스 단체	87329*	기타 공연단체
		· 투우장, 투견 장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92332	자연보존 관리업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9233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		88232*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92411	자영 경기업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92412	경기단체 및 경기 후원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88321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 기타 경기 전 문종사업	883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92421	실내경기장 운영업		883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2	운동장 운영업		883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3	야구장 운영업		883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4	경마 및 유사 경기장 운영업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92429	달리분류되지않은 경기장 운영 업		883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32	정구장 운영업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92436	탁구장 운영업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92439	달리분류되지않은 운동설비 운 영업	· 스키장	88332	스키장 운영업
		· 종합오락운동 시설	88395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88399*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92495	낚시장 운영업		889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924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 련 산업	· 오락용 낚시 배,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88929*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구코드	항 목 명		신코드	항 목 명
		· 기타 오락관련 산업	88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산업
93092	욕탕업	· 기타 욕탕업 · 마사지업 · 비만관리	93121 93122 93129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3093	결혼 상담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 스업
93094	수화물 보관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 스업
9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서비스 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 스업
02013	· 식용야생임산물 채취활동은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재배업으로 분류		분할	분할
05119	· 해역별에 따라 05111~05113으로 분류			
15489	· 가공 대상 및 가공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 제 조업으로 분류			
35115	· 해체선박의 재질별로 해당 선박 건조업에 분류			
45211	· 건설 종류에 따라 452분류 중의 해당 건설업에 분류			
51104	· 특정 상품 전문 무역중개는 상품의 종류에 따 라 51101, 51102, 51109 중의 해당상품에 각각 분류			
51912	· 취급 상품별로 512 및 513의 해당 상품으로 분 류			
51913	· 취급 상품별로 514의 해당 상품으로 분류			
51914	· 취급 상품별로 515, 516 및 517의 해당 상품 으로 분류			
51915	· 취급 상품별로 518의 해당 상품으로 분류			
51919	· 취급 상품별로 519의 해당 상품으로 분류			
51991	· 특정상품 전문 연쇄화 사업은 해당 제품 도매 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 목 차

<b>1.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요</b> .....	<b>85</b>
가. 직무와 직업의 정의 .....	85
나. 직업분류 개념 .....	86
다. 직업분류 목적 .....	86
라. 분류기준 .....	87
마. 분류원칙 .....	89
바. 특정직종의 분류요령 .....	92
사. 분류체계 및 부호 .....	94
<b>2. 제5차 개정 주요내용</b> .....	<b>95</b>
가. 개정특징 .....	95
나. 대·중분류별 개정내용 .....	96
<b>3. 분류별 내용설명</b> .....	<b>102</b>
가. 대분류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102
나. 대분류1 전문가 .....	103
다. 대분류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106
라. 대분류3 사무 종사자 .....	109
마. 대분류4 서비스 종사자 .....	111
바. 대분류5 판매 종사자 .....	112
사. 대분류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113
아. 대분류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14
자. 대분류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117
차.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 .....	119
카. 대분류A 군인 .....	121
<b>별첨 : 구분류대비 변경항목</b> .....	<b>122</b>



# 1.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요

## 가. 직무와 직업의 정의

- 직업분류에서 직무(Job)와 직업(Occupation)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
  - 직무 :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된 업무
  - 직업 : 유사한 직무의 집합
    - \* 유사한 직무란 「동일한 형태의 일」을 말함.
- 즉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여 수입이 있는 일을 말하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4) 현재 하고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에서 제외함.
  -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재산 수입이 있는 경우
  - (2)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 (3) 경매, 경륜 등에 의한 배당금 수입이 있는 경우
  - (4)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 (5) 자기 집에서 가사 활동
  - (6)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 (7)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 (8) 법률위반 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즉 강도, 절도, 매춘, 밀수 및 수형자의 활동

예1)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2) 빌딩임대료만의 수입이 있으나 빌딩관리 및 수금을 하는 경우

→ 직업으로 봄

예3)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4)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 수입이 있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5)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 직업으로 보지 않음

예6) 주부가 집에서 목걸이를 꿰는 일을 하는 경우

→ 직업으로 봄

## 나. 직업분류 개념

- 직업분류 :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 국내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

## 다. 직업분류 목적

- 직업관련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 확보
  -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LO의 국제권고분류체계(ISCO)를 근거로 설정
-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직종별 급여 및 수당지급 결정기준
- 직종별 특정질병의 이환율, 사망률과 생명표작성 기준
- 산재보험률, 생명보험률 또는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 라. 분류기준

- 직업분류체계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직능(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
  - 직능은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의 숙련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직능(Skill)과 자격(Qualification)은 아래와 같이 구분
    - 직능 :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습득
    - 자격 : 시험합격 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부여
- ISCO에서 정의한 직무능력수준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되는 것이므로 분류에서 사용된 기본개념은 정규교육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업무의 수행능력임
-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체계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직무능력수준으로 구분하고 직무능력이 정규교육(또는 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 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5, 6, 7세에 시작하여 6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1수준의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누구나 수행 가능
  -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1,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 2, 3수준의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

련을 필요로 하며 일정한 직무훈련과 실습과정이 요구됨. 또한 훈련 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음

- 제3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2,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5수준의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로 초급 대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님.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되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 제4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6, 7수준의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됨.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음.

위와 같은 4개의 직무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직업분류상의 11개 대분류항목 중 9개 항목의 정의에 적용되었으며, 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대분류 A: 군인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1 전문가 : 제4직능 수준 필요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제3직능 수준 필요

3 사무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4 서비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5 판매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제2직능 수준 필요
- 9 단순노무 종사자 : 제1직능 수준 필요
- A 군인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직무능력에 따른 대분류 체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군인
-------------------------	----

전 문 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	-----------	-------------------------	----------------------	-------------------------

단순노무 종사자

**마. 분류원칙**

(1)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업무 구성
-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하므로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원칙 적용

(가) 수적우위 원칙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

예1) 경제학자로서 대학교수인 경우

→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주업무인 경우 대학교수로 분류

예2) 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면서 의과대학에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나가는 경우

→ 의사로 분류

예3) 경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워드, 서류정리 등을 하는 경우

→ 회계사무원으로 분류

예4) 의류를 소매하면서 대금계산을 겸하는 경우

→ 의류소매 판매원으로 분류

예5) 분식점을 경영하며 조리를 직접하는 경우

→ 조리사로 분류

(나)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

예1) 분식점에서 조리과 배달을 같이 하는 경우

→ 조리는 제2직능 수준, 배달은 제1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직능 수준인 조리사로 분류

예2) 대중가요가수가 대중업소에서 노래하는 경우

→ 대중가요가수는 제4직능, 대중업소 가수는 제3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대중가요가수로 분류

제외) 피자 가게에서 배달을 승용차로 하는 경우

→ 배달이 업무이며 승용차는 이를 위한 수단이므로 운전원의 직능이 높다 하더라도 배달원으로 분류

#### (다) 생산업무 우선 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

예1)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

→ 제빵원으로 분류

예2) 채소를 재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농업숙련 종사자로 분류

예3) 음식을 조리하여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조리사로 분류

#### (2)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

(가)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

(나)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

(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분명치 못할 경우에는 조사시 최근의 직업

예) 회사원이 퇴근 후 번역일을 하는 경우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 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곳에 분류
- 회사근무 시간이 번역시간보다 적은 경우 번역가로 분류
- 회사근무 시간과 번역시간이 같은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분류

## 바. 특정직종의 분류요령

### (1) 관리, 행정 및 입법적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

관리,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분류 '0 :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에 분류되므로 정책 결정,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및 공사기업 감독자와 농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관리자, 자영업주 중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이 여기에 분류

### (2) 품질검사 직종

주된 업무가 제품의 품질기준과 제조 명세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면 '2372 :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종사자'로 분류, 제품을 기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시각적 확인검사를 주로 하는 시험 및 검사원은 그 제품의 생산자와 함께 분류

### (3) 자영업주 직종

자영업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고용상태에 따라 구분된 개념이므로 직업분류에서 자영업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동일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주된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

### (4) 감독 직종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수행



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 그러나 주된 업무가 자기 감독 하에 있는 일 또는 근로자의 일상 작업활동을 기획, 조직, 통제, 지시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보아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또는 03 : 일반관리자'로 각각 분류

(5) 지도 직종

계속적인 관찰, 평가 및 지도에 의하여 직무훈련 업무를 주로 하는 지도직 종사자의 직업은 그들이 지도하는 특정직종, 기능 또는 기계 조작 종사자로 분류

(6) 연구 및 개발직종

연구 및 개발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1 : 전문가'에서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 다만, 연구자가 교육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로 분류

(7) 군인 직종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 군인'에 분류. 이것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보다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 규정된 것임. 산업분류상에서 군부대는 '7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에 분류

(8) 기능원과 기계조작원의 직무능력 관계

하나의 제품이 기능원에 의해 제조되는지 또는 대량 생산기법을 유도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제조되는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음. 즉 기능원은 재료, 도구, 수행하는 일의 순서와 특성 및 최종제품의 용도를 알아야 하는 반면 기계조작원은 아주 복잡한 기계 및 장비의 사용방법, 기계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또한 기계조작원은 생산품의 명세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기법이 도입될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수준과 훈련을 필요로 함

직업분류에서는 기술개발의 차이에 따라 요구되는 이러한 직무능력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여 대분류7, 8을 설정하고 '대분류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는 석재 부설원, 목수, 기계설치원, 도자기제조원, 장식도장원, 나무조각원과 같은 장인 및 수공 기예성 직업을 분류, '대분류8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는 제품의 가공에 관련된 기계 지향성 직업으로 분류하였음

### 사. 분류체계 및 부호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
  - 대분류 11, 중분류 46, 소분류 162, 세분류 447, 세세분류 1,404개
- 분류부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대분류 1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3자리, 세분류 4자리, 세세분류 5자리
  - 동일 중·소분류에 포함된 세·세세분류 끝항목의 숫자 9는 「기타~」를 말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표시한 것임

#### < 분류단계별 항목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	8	34	72
1 전문가	8	33	75	240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9	29	68	193
3 사무 종사자	2	11	28	58
4 서비스 종사자	4	14	31	75
5 판매 종사자	3	6	9	18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3	10	24	4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	17	70	282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	23	82	357
9 단순노무 종사자	4	9	23	58
A 군인	1	2	3	3
계	46	162	447	1,404

## 2. 제5차 개정 주요내용

### 가. 개정특징

- (1) 새로운 산업출현과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
  -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직업 신설
  - 직업의 전문화·단순화를 반영하여 전문직 세분, 생산관련직 통합
- (2) 우리나라의 사회실정 고려 및 직업분석의 효용성 제고
  - 대분류의 판매직과 서비스직 세분 및 중·소·세분류 확대 조정
  - 금융전문가 신설
  - 라디오·TV아나운서, 디자이너, 영양사 등을 준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이동
  - 행정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행정 및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직업의 분류체계 신설·조정
- (3)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실 이용도 제고
  - 맹인학교 교사→ 시각장애학교 교사, 사업능률 전문가→ 경영지도·진단 전문가, 보모→ 보육사, 보도석재 포장원→ 보도블럭 설치원, 용융절단원→ 화염절단원
- (4) 쇠퇴한 직업 및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은 통·폐합
  - 타자원, 버스안내원, 전통적 촌장, 사탕수수재배자, 시가전차운전원
- (5) 관리자, 전문가 및 판매직 등에 대한 분류기준 및 분류단계별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직업에 관한 각종 통계작성 및 이용을 현재보다 더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 나. 대·중분류별 개정내용

- (1) 대분류별 비중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사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세분

- 10개 대분류 체계에서 11개로 조정

### <조정 대분류 부호 및 명칭>

현 행	개 정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1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3 사무 종사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4 서비스 종사자
6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5 판매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군인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 (2) 대분류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현행 입법공무원의 명칭을 의회의원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만 포함
  -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분류
- 법인관리자 및 종합관리자의 명칭을 행정 및 경영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변경
  -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업체의 관리자는 일반관리자에 포함토록하여 분류기준 구체화

- (3) 대분류1 전문가

- 비중을 고려하여 과학, 컴퓨터, 공학, 의료, 교육, 경영, 법률·사회서비스, 예술로 중분류 체계 세분
  - 과학전문가에 자연과학 뿐 만 아니라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통합

- 자연과학자 중 OR분석가 및 보험계리사는 경영 및 재정전문가로 이동
- 행정의 전문화 및 금융 산업에서 발생한 새로운 직종을 반영하여 행정 및 금융 전문가 신설
-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라디오·TV아나운서, 디자이너, 영양사, 치료사 직종을 준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이동

현 행	개 정
21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	11 과학 전문가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22 생명과학 및 보건 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23 교육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 관련전문가

(4) 대분류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전문가의 중분류 체계 확대에 따라 준전문가도 동일하게 세분
- 직무상 분리가 곤란한 간호준전문가를 간호전문가와 통합
- 검시관, 정골요법사, 척추지압치료사, 광대 등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 및 쇠퇴직종과 인물사진가, 상업사진가, 기타사진가 등 직무상 분리가 곤란한 직종 통폐합

현 행	개 정
31 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34 기타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5) 대분류3 사무 종사자

- 사무 종사자를 일반사무원과 사무보조원으로 설정하여 분류체계 현실화

현 행	개 정
41 일반 사무직원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412 계수사무원 413 재료기록 및 운송사무원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419 기타 사무직원	31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311 일반사무종사자 312 기획 및 홍보사무 종사자 313 정부행정사무 종사자 314 판매관련사무 종사자 315 계수사무 종사자 316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317 사무지원 종사자 318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
42 고객봉사 사무직원 42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422 고객안내 사무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321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 종사자 322 안내 및 접수 사무 종사자 323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6) 대분류4 서비스 종사자

- 서비스의 인지도를 감안하여 분류체계 변경  
 (현행) 여행 및 운송, 조리 및 음식, 대인서비스, 보안서비스  
 (개정) 대인서비스, 조리 및 음식, 여행 및 운송, 보안서비스
-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를 개인보호, 오락 서비스, 여가관련 서비스, 결혼관련서비스 종사자로 세분하여 포함

현 행	개 정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41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7) 대분류5 판매 종사자

- 판매의 인지도를 감안하여 분류체계 변경  
 (현행) 모델, 판매 및 선전원  
 (개정) 도소매 판매, 통신 판매, 모델 및 홍보
- 판매종사자의 비중을 감안하여 도소매 판매 종사자의 분류체계 확대
- 통신판매의 증가에 따라 전화통신, 컴퓨터 통신으로 세분

현 행	개 정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2 통신 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8) 대분류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대분류 명칭변경  
 (현행)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변경)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소분류 614 임업 및 관련 근로자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6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농업관련 숙련 종사자
614 임업 및 관련 근로자 62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62 임업관련 숙련 종사자 63 어업관련 숙련 종사자

(9) 대분류7, 8 기능 및 기계조작 종사자

- 소분류 723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828 조립원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3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73 정밀, 수공예,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종사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종사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종사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8 조립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조작 종사자 82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산업기술의 발달에 의한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작업형태가 기계로 이동한 경우 대분류7의 관련 기능근로자를 대분류 8로 이동

현 행	개 정
7142 차량도장원 및 관련 도장원 7213 판금 근로자 7223 기계공구조정원 및 조정조작원 7345 제본원 및 관련 근로자 7416 담배가공원 및 담배제품 제조원	8224 차량도장기 조작종사자 8212 판금기 조작종사자 8211 기계공구 조작종사자 8252 제책용 기계조작 종사자 8284 담배제조기 조작종사자

- 기계화에 따라 비중이 감소한 경우 기타로 통합
  - 대분류8의 기계조작원과 중복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742 목재처리원,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중 74211 목재건조원 74212 목재처리원	814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8141 목재가공장치 조작종사자 81413 목재건조기 조작원 81414 목재처리기 조작원



현 행	개 정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중	827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74114 훈제원	82711 훈제기 조작원
74116 소시지 제조원	82712 햄·소시지제조기 조작원
74124 초콜릿 제조원	82713 통조림기 조작원
74125 설탕과자 제조원	82742 사탕·껌제조기 조작원
7413 낙농제품 제조원	8272 낙농제품 기계조작 종사자
74131 버터 제조원	82724 버터, 치즈제조기 조작원
74132 치즈 제조원	
74133 아이스크림 제조원	82725 아이스크림제조기 조작원
74139 기타 낙농제품 제조원	82729 기타 낙농제품제조기 조작원
74142 과일 및 채소주스 제조원	82755 과일 및 채소주스기 조작원

(10) 단순노무 종사자

- 소분류 931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상향 조정 및 세분
- 소분류 행상 및 관련 근로자 대분류5 판매 종사자로 이동

현 행	개 정
9 단순노무직 근로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1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1 행상 및 관련 근로자	-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3. 분류별 내용설명

#### 가. 대분류0 국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및 특수이익 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 수행

##### 01 국회의원 및 고위임원(기업 고위임원 제외)

- 정책적인 측면의 관리자
- 법률과 규칙 제정, 비준, 개정 및 폐지
-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정책 결정
- 정당, 노동조합 및 특수이익단체를 대표하여 유사 기능 수행

<예 시>

국회의원, 시도 국회의원, 시군 및 자치구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 고위 공무원(기관 총괄관리), 정당·경제이익단체 등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 운영적인 측면의 관리자
- 정부기관, 기업 및 단체 또는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 수립 및 그들의 활동 지휘·조정(관리자 3인 이상)

<예 시>

기업 고위임원(업체 총괄관리), 정부행정부서 관리자(국장급, 파트 총괄관리),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 03 일반관리자

- 1인 이하 다른 관리자의 협조와 비관리직의 보조하에 소규모 기업과 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관리자 2인 이하)
-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관리적인 업무 수행

<예 시>

관리자가 2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 관리자, 기업체의 영업소, 지점 등의 소장(직원관리, 회계, 업무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 수행), 통계청 지방사무소 소장

<제 외>

기업체의 영업소, 지점 등의 소장(회계업무가 제외된 직원관리, 업무관리 등 제한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통계청 출장소 소장(29)

## 나. 대분류1 전문가

-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 연구, 개발 및 개선
-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 수행

### 11 과학 전문가

- 통상적인 학자개념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 해당 부문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 개선, 개발

<예 시>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기상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식물학자, 세균학자, 생리학자, 약학자, 농경학자, 축산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 컴퓨터 및 통신·인터넷과 관련된 부문의 연구, 개발 및 유지

<예 시>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정보보호 전문가, 정보시스템 감리인, 컴퓨터 네트워크운영 전문가,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인터넷서비스 관리원, 시스템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프로그래머,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제 외>

컴퓨터관련 운영원(22), 컴퓨터 프로그램작성 준전문가(22)

### 13 공학 전문가

- 토목·기계공학 등 공학분야의 연구, 개선, 개발 및 관련 지식응용

<예 시>

건물건축가, 조경건축가, 도시설계가, 교통설계가, 토목기술자, 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반도체기술자, 조선기술자, 항공우주기술자, 자동차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음식료품기술자, 고무화학기술자, 비료기술자, 섬유기술자, 화장품기술자, 석유기술자, 금속기술자, 측량전문가, 산업안전기술자, 교통안전기술자, 생산관리기술자, 재료기술자, 환경기술자

<제 외>

인테리어 디자이너(18), 항공기 조종사(23), 선박기관사(23)

### 14 보건의료 전문가

- 환자의 진료, 간호, 장애치료 및 영양기법의 연구, 개선 및 개발

<예 시>

전문 의사, 일반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상담영양사

<제 외>

약사보조원(41), 수 의사보조원(41)

### 15 교육 전문가

-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가르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개선 및 개발

<예 시>

대학교수,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직업훈련기관 강사, 정부연수기관 강사, 기업체 연수기관 강사, 입시학원 강사, 고시학원 강사, 영어학원 강사, 컴퓨터학원 강사, 음악학원 강사, 미술학원 강사, 교육연구 전문가, 장학사, 교육연구사

<제 외>

대학교 총장(02), 대학교 학장(02), 교장(02), 가정보육사(41)

##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 행정, 회계 및 재정분석, 노사관계, 금융 및 사업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의 활용과 이에 대한 이론, 운영방법 등의 연구, 개선 및 개발

<예 시>

정부정책 기획전문가, 정부집행 행정전문가, 기업경영 행정전문가, 인사행정 전문가, 회계관리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재정분석가, 노무사, 기업체 개별사업장 노조전임자, 직업연구 전문가, 증권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보험계리인, 홍보전문가, 조사분석가, 경영지도·진단전문가, 관세사, 기업창업상담 전문가

##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 법률문제 연구, 법정에서 사건 변론·기소 및 판결선고
- 관련 수혜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
- 종교의례·의식 거행 및 종교가르침 전파

<예 시>

검사, 변호사, 판사, 변리사, 법무사, 공증인,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서비스 전문가, 목사, 신부, 스님, 선교사, 포교사

##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기록물 관리, 소장품의 체계적인 정리 및 전시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및 기타 예술작품 창작
- 영화, 방송, 연극에서 연기 및 감독

<예 시>

기록보관원,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사서, 소설가, 시인, 극작가, 수필가, 번역가, 통역가, 기자, 컬럼니스트, 리포터, 평론가, 편집자, 콘텐츠라이터, 작사가, 해설가, 조각가, 화가, 상업 미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만화가, 만화영화작가, 공예가, 디자이너, 작곡가, 성악가, 기악연주자, 대중가요 가수, 국악인, 안무가, 무용가, 영화배우,

탤런트, 연극배우, 개그맨, 성우, 감독, TV아나운서, 뉴스캐스터

<제 외>

사진기자(23), 밴드마스터(28), 대중업소 가수(28), 백댄서(28), 광대(28)

## 다. 대분류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 수행
- 의료, 경영, 상품거래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및 스포츠 활동 수행

###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및 사회과학 등에서 개념, 운영 기법의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 수행

<예 시>

수학 준전문가, 통계 준전문가, 물리학 기술공, 화학 기술공, 생물학 기술공, 의료과학 기술공, 농경 기술공, 임업 기술공, 농업 자문가, 영림 자문가, 사회분석 연구보조원

<제 외>

통계사무원(31), 임상병리사(23)

###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 컴퓨터와 주변장치 통제 및 조작
-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작성

<예 시>

컴퓨터 운영원, 컴퓨터 프로그램작성 준전문가, 소프트웨어 설치원, 컴퓨터 테이블장치(콘솔)조작원, 컴퓨터 주변장치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제 외>

산업용 로봇 조작용(81)

##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건축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 수행
- 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운행 및 제품의 안전성 검사 수행

<예 시>

건설토목 기술공, 토목건축 기술공, 측량 기술공, 전력송전 기술공, 전기설비감리 기술공, 통신 기술공, 컴퓨터설계 기술공, 전자장비 기술공, 산업용기계 기술공, 석유화학 기술공, 비료 기술공, 채광 기술공, 기계제도사, 건축제도사, 기술도해사, 사진가, 사진기자, 촬영기사, 녹음기사, 무선통신사, 영사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선박기관사, 항해사, 항공기 조종사, 항법사, 항공교통 관제사, 건물검사원, 화재감식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원, 품질검사원, 환경영향평가원, 생산공학 기술공

<제 외>

전기장비 조립원(83), 사진작가(18), 선박기계 기술자(13), 항공기정비원(73)

##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 의료진료 전문가를 보조하여 제한적인 간호업무 수행
- 응급구조에 따른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 수행

<예 시>

보건진료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위생사, 안마사, 전통의료 치료사, 신양치료사, 침사, 접골사

<제 외>

간병인(41), 환자운반원(41), 응급구조대(4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원(23), 위생검사 공무원(29)

## 25 교육 준전문가

-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정규교육 과정 보조 및 실기지도

<예 시>

대학실험 조교, 초등학교 보조교사, 중등학교 보조교사, 가정학원 강사(꽃꽂이 학원, 조리학원), 기술학원 강사(자동차정비학원, 이미용학원), 사무학원 강사(부기학원, 경리학원, 속기학원), 보습학원 강사, 응변학원 강사, 학습지 방문교사, 자동차 운전교관

<제 외>

대학사무 조교(31)

##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 직업상담, 금융, 판매 및 상품중개에 관련된 실제적·기술적 업무 수행

<예 시>

외환중개인, 증권중개인, 선물거래 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인, 부동산중개인, 부동산 신탁관리원, 부동산 상담원, 여행상품 개발원, 기술 및 상업판매원, 자동차 판매원, 구매대리인, 감정사, 경매사, 상품중개인, 머천다이저, 물류관리사, 통관대리인, 인력알선원, 연예인 매니저, 이벤트 대리인

<제 외>

증권매매주문 접수원(31), 보험사무원(31), 보험모집인(51), 분양사무원(31), 산업용중간재 도매판매원(51)

##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 관련 수혜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 및 전파

<예 시>

아동복지 상담원, 부녀자복지 상담원, 생활지도원,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전도사, 수사, 수녀

<제 외>

선교사(17)



##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업소 등에서 음악, 무용 등 공연
- 운동경기 참여 및 경기훈련 지휘

<예 시>

밴드마스터, 악사, 나이트클럽 가수, 나이트클럽 무용수, 백댄서, 거리 초상화가, 대중업소 연예사회자, 대역 배우, 직업운동선수, 직업경주선수, 바둑기사, 경기감독, 경기심판, 에어로빅 강사, 태권도 사범, 광대, 곡예사, 미술사, 동물조련사

<제 외>

관현악단 지휘자(18), 대중가요 가수(18)

## 29 기타 준전문가

- 관리자의 지휘하에 단위의 장 지원
- 법률, 의료기록 등의 작성, 검토
- 제한적인 관리활동
- 관세, 조세, 사회보장에 관련된 승인신청 허가 및 검사

<예 시>

관리비서, 속기사, 정부기관 출장소장, 정부기관 사무소 관리과장, 기업체 영업소 관리과장, 특허사무원, 집달관, 법무사무원, 변호사사무원, 법정사무원, 의무기록사, 의료수가 산정원, 감사준전문가, 세관공무원 조세공무원, 세무공무원, 사회보장 공무원, 허가공무원, 병무공무원, 위생검사 공무원, 선거공무원

## 라. 대분류3 사무 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수행
-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금전취급 활동, 여행알선, 정보요청 및 예약업무에 관련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적인 업무 수행

###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 사업체내 각종 문서 및 직원 인사관리
- 관리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 입안
- 홍보 및 판매사무 수행
- 회계, 생산, 운송 등의 사무 수행
- 작업에 관련된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예 시>

총무사무원, 사무조교, 인사사무원, 해외인력 관리사무원, 기획사무원, 홍보사무원, 정부행정사무원, 판매관리사무원, 분양사무원,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구매사무원, 금융사무원, 보험사무원, 통계자료 집계사무원, 통계조사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검수사무원, 자재수급 사무원, 생산계획사무원, 운송사무원, 일반사무 보조원, 워드프로세서 조작원, 사무용기기 조작원, 자료입력사무원, 비서, 도서대출사무원, 기술자료 관리원, 우편물분류 사무원, 자료처리심사 사무원, 인쇄교정원, 대서사무원

<제 외>

관리비서(29), 법무사(17)

### 32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 금전취급활동, 여행알선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접수 등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업무 수행

<예 시>

대금수납 사무원, 대표사무원(지하철 대표원), 은행출납 사무원, 외환취급 사무원, 우체국출납사무원, 수금원, 복권판매원, 마권발매원, 시설안내 사무원, 백화점안내데스크 사무원, 방송안내 사무원, 전화교환원, 전화번호 안내원, 여행표발행 사무원, 여행사무원, 호텔접수원, 음식점접수원, 병원접수원, 고객상담 사무원, 안내장 및 고지서 발송 사무원

<제 외>

여행사 운영부서 관리자(02), 여행상품 개발 및 상담종사자(26)

## 마. 대분류4 서비스 종사자

- 가정 및 기타 시설에서 보육 및 보호업무 수행
- 이·미용 및 장의업무 수행
- 음식료품 조리 및 제공
- 신변보호에 관련된 서비스업무 수행

### 41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 가정 및 시설에서 어린이 보육 및 보호업무 수행
- 이미용, 장의, 오락 및 여가서비스 제공

<예 시>

가정 보육사, 시설보조 보육사, 간병인,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환자운반원, 가정간호 시중원, 약사보조원, 수의사보조원, 이용사, 미용사, 피부관리사, 육실종사원, 애완동물 미용사 및 관리원, 화장사, 분장사, 코디네이터, 숙박시설 시중원, 장의사, 놀이기구 종사원, 노래방 관리인, 클럽호스티스, 응원단원, 레크레이션 지도자, 골프장캐디, 모니터요원, 도박진행자, 전당업자, 결혼상담원, 예식종사원, 점술가, 운명철학자, 무당

<제 외>

간호사(14), 간호조무사(24)

### 4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 사업체, 시설, 가정, 선박 또는 여객열차에서 음식 조리 및 제공

<예 시>

주방장, 음식점조리사, 간이음식점 조리사, 병원조리사, 열차식당 조리사, 차류조리사, 음식업서비스 종사원, 주류서비스 종사원, 차류서비스 종사원, 바텐더

###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 항공기, 열차, 선박, 버스 등 차량에 의한 여행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제공
- 개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여행안내
- 외국인의 국내 여행안내

<예 시>

선박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여객열차 승무원, 케이블카 승무원, 국내여행 안내원, 관광안내원, 등산안내원, 국외여행 안내원, 관광통역 안내원, 낚시안내원

<제 외>

선박웨이터(42)

####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
- 질서 유지 및 법률과 규정을 이행토록 조치

<예 시>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대, 기업체 소방원, 교도관, 보도관, 청원경찰, 안전순찰원, 인명구조원, 경호원, 수렵감시원, 장내 질서유지원

<제 외>

화재예방 감식원(23), 화재조사원(23), 구급요원(24)

#### 바. 대분류5 판매 종사자

- 도·소매 상점이나 유사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 판매
-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 수행

####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 도소매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
- 다른 사업체 및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
- 노점에서 판매

<예 시>

도매 판매원, 소매업체 판매원, 주유원, 소매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노점판매원

## 52 통신 판매 종사자

- 전화주문에 의하여 상품 판매
- 이동전화, 호출 등의 통신설비 판매
- 통신설비 및 서비스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재판매

<예 시>

전화통신 판매원, 이동전화 판매원, 별정통신 판매원

##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홍보활동 수행

<예 시>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상품홍보원, 나레이터 모델, 행사도우미

## 사. 대분류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의 재배·수확 및 동물의 번식·사육
- 산림의 경작, 보존 및 개발
- 물고기의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의 양식·채취

## 61 농업 숙련 종사자

-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의 재배·수확 및 야생식물 채취
- 동물의 번식·사육 및 축산물 생산
-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 수렵

<예 시>

곡식작물 재배자, 특용작물 재배자, 채소 재배자, 과수작물 재배자, 열대과일 재배자, 정원사, 원예사, 육묘재배자, 버섯재배자, 복합작물 재배자, 시설작물 재배자, 낙농품 생산자, 가축사육자, 가금사육자, 양봉가, 양잠가, 복합동물 사육자, 동물부화자, 동물감별사, 수렵원

<제 외>

임업용 식물증식원(62)

## 62 임업 숙련 종사자

- 수목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등 영림, 산림을 보존하는 업무 수행

<예 시>

조림원, 영림원, 벌목원, 임산물 채취원, 임업용식물 증식원, 목탄굽기원

<제 외>

식용 수액채취원(61), 농업용 육묘재배자(61), 목탄생산기 조작원(81)

## 63 어업 숙련 종사자

- 물고기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

<예 시>

물고기양식원, 굴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내수면어부, 연안어부, 해녀, 원양어부

## 아. 대분류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광공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성형 및 각종 기계의 설치·정비

- 섬유, 수공업 제품에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 가공

※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며 이러한 업무는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품광물 채굴 및 채취

-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의 성형·완성

- 건물 및 기타 구조물 등의 건설, 유지

<예 시>

광원, 채석원, 염전원, 점화원, 발파원, 석재선별원, 석재절단원, 석재

재단원, 석재조각원, 전통건물 건축원, 조적원, 석재부설원, 보도블럭 설치원, 조립콘크리트 설치원(피시조립원), 거푸집설치원, 철근원, 시멘트혼합원, 건축목공, 소목세공, 장치물 목공, 무대목공, 건물칸막이 설치원, 건물보수원, 비계설치원, 건물해체원, 대리석부착원, 타일부착원, 마루설치원, 미장원, 단열원, 유리원, 배관원, 건축물 전기원, 네온사인 전기원, 건물도장원, 철구조물 도장원, 도배원, 건물외벽청결원, 배관청결원, 수조청결원, 병충해 방역원

<제 외>

광산착암기 조작원(81), 석제품조작기 조작원(82), 조각가(18), 콘크리트완성기 조작원(82), 도로포장기 운전원(84), 목재가구 제조원(75), 건물건설 단순노무자(94), 전기부착원(73)

##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금속주조, 용접, 단조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
- 중금속구조물의 건립, 유지 및 수리

<예 시>

금속모형 제조원, 주형원, 금속주입원, 용접원, 절단원, 구조금속 제작원, 철물 설치원, 샷시 제작원, 구조강 건립원, 선박구조물 건립원, 건설인양장비 삭구원, 현수교량케이블 접속원, 구난잠수요원, 수중작업원, 신선원, 단조원, 금속성형원, 대장원, 공구제조원, 게이지 제조원, 자물쇠 조립원, 총기원, 절삭공구 갈이원, 톱날연삭원, 금속세척원

<제 외>

케이블 및 로프설치기 조작원(82), 공구생산기 조작원(82), 금속광택기 조작원(82)

##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기관, 차량, 전기 및 전자장비를 포함한 기계설치, 유지 및 정비업무 수행

<예 시>

자동차기관 정비원, 자동차 경정비원, 이륜자동차 정비원, 특수차량 정비원, 항공기 정비원, 철도차량 정비원, 전동차량 정비원, 선박기관 정비원, 농기계 설치 및 정비원, 광산기계 설치 및 정비원,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금속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전기발전기 설치원, 엘리베이터 설치원, 전기냉난방장치 설비원, 자동차 전기원, 전기기구 설치 및 정비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원, 신호장비 설치원, 의료장비 설치원, 컴퓨터 설치원, 전신전화 설치 및 수리원, 통신케이블 가설원, 인터넷전용회선 가설원

<제 외>

자동차기관 조립원(83), 전기장비 조립원(83)

####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 정밀기기, 악기, 목재, 섬유, 가죽과 관련 재료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한 장신구, 귀금속 제품, 도자기 및 유리제품 등의 각종 제품 제조 및 수리

<예 시>

시계 제조 및 수리원,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광학기구 제조 및 수리원, 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악기 제조 및 수리원, 악기조율사, 보석세공원, 보석부착원, 도자기 주형원, 도자기 녹로원, 벽돌성형원, 유약처리원, 유리가공원, 유리장식원, 간판도장원, 목공예원, 인장공예원, 종이공예원, 수편물원, 한복제조원, 가죽수공예원, 석공예원, 양초공예원, 인쇄조판원, 사진식자원, 연판제조원, 인쇄제판원, 스크린 인쇄원, 사진처리원

<제 외>

치아보철기 제조원(24), 기계공구 조작원(82), 전자시계 조립원(83), 치과기공사(24), 유리생산로 조작원(81), 건물도장원(71), 직조기 조작원(82), 필름현상기 조작원(82)

####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농업 및 수산업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소비용의 식품과 각종 제품 가공처리

- 목재, 섬유, 모피, 가죽 등으로 제품 제조 및 수리

<예 시>

도살원, 절육원, 염장원, 수산물가공원, 제빵제과원, 떡제조원, 두부제조원, 과일선별원, 과일 및 채소염장원, 목재선별원, 장릉제조원, 책



상제조원, 목형제조원, 목재공작기 조정원, 바구니 세공원, 등가구제조원, 섬유선별원, 양모세척원, 양복제조원, 양장제조원, 모자 및 가발제조원, 근무복제조원, 무대의상 제조원, 모피의복 제조원, 옷본제조원, 재봉원, 가구장식물 제조원, 차량시트 제조원, 의복수선원, 신변잡화 수선원, 가구장식물 수선원, 펠트처리원, 제화원, 구두수선원, 구두원형제조원, 마구류 제조원

<제 외>

육류가공기 조작원(82), 햄·소시지제조기 조작원(82), 음식점 조리사(42), 초콜릿제조기 조작원(82), 목재처리기 조작원(81), 건축목공(71), 편직기 조작원(82), 자동재봉기계 조작원(82), 구두미화원(91)

## 자. 대분류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조작

-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 조립

※ 작업은 기계조작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됨

###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자동화된 조립라인과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가공용 산업장치 및 상하수 처리, 전력발전 및 기타 목적용의 산업장치 조작

<예 시>

채광장치 조작원, 광석 및 석제가공장치 조작원, 유정천공 및 시추장비 조작원, 금속용광로 조작원, 제련로 조작원, 금속용해로 조작원, 압연기 조작원, 주조기 조작원, 금속열처리로 조작원, 금속인발기 조작원, 금속압출기 조작원, 유리가공장치 조작원, 도기로 조작원, 유리제품제조기 조작원, 목재가공장치 조작원, 펄프제조장치 조작원, 종이제조장치 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

장치 조작용, 목탄생산기 조작용, 화학섬유생산기 조작용, 비료제조기 조작용, 발전장치 조작용, 보일러 조작용, 정수장치 조작용, 소각장치 조작용, 하수처리장치 조작용, 자동조립라인 조작용

<제 외>

광원(71), 채석원(71), 석재절단원(71), 철사인발원(72), 벽돌 및 타일 성형원(74), 목탄굽기원(62), 산업용 로봇조종원(22)

## 82 기계조작용 및 관련 종사자

-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산업용 기계 조작

<예 시>

기계공구 조작용, 판금기 조작용, 석재가공기 조작용, 콘크리트 혼합장치 조작용, 약제품 생산기 기계조작용, 세제생산기 기계조작용, 폭약용 기계조작용, 도금기 조작용, 차량도장기 조작용, 사진처리기 조작용, 리놀륨생산기 조작용, 고무제품 기계조작용, 플라스틱제품 기계조작용, 나무제품 기계조작용, 인쇄기 조작용, 종이제품 기계조작용, 섬유가공기 조작용, 표백기 조작용, 염색기 조작용, 재봉기 조작용, 모피 및 가죽가공기 조작용, 의복세탁기 조작용, 신발제조기 조작용, 육류 및 어류가공기 조작용, 낙농제품 기계조작용, 곡식 및 조미료제분기 조작용, 곡류제품 제조기 조작용, 과일 및 채소가공기 조작용, 유지제조기 조작용, 설탕제조기 조작용, 기호식품 및 음료제조기 조작용, 담배제조기 조작용, 전기·전자장비 제조기 조작용, 도로표시기 조작용, 상표부착기 조작용

<제 외>

차량차체 용접원(72), 내연기관 조립원(83), 항공기 조립원(83), 건물도장원(71), 목공예원(74), 섬유수공예 종사자(74), 재봉원(75), 한복자수원(74), 수동다림질원(91), 신발수선원(75), 의복옷본 제조원(75), 제빵원(75), 조리사(42), 포도주 시음원(26), 수동포장원(93)

## 83 조립 종사자

- 엄격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구성부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 조립

<예 시>

자동차 조립원, 항공기 조립원, 선박기관 조립원, 광산용기계 조립원, 농업용기계 조립원, 건설용기계 조립원, 기계공구 조립원, 전기장비 조립원, 영상·음향장비 조립원, 사무용기기 조립원, 가정용 전기기구 조립원, 금속제품 조립원, 목재제품 조립원

####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열차,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산업 및 농업용 장비 운전·조작
- 선박에서 갑판일 수행

<예 시>

열차기관사, 지하철기관사, 화물열차 차장, 철도신호원, 철도수송원, 택시운전원, 승용차운전원, 경화물차운전원, 구급차운전원, 버스운전원, 승합차운전원, 트럭운전원, 특수차 운전원, 농기계운전원, 산림용기계운전원, 굴삭기운전원, 불도저운전원, 도로정지기운전원, 크레인운전원, 리프트조작원, 갑문조작원, 적재용차량운전원, 갑판원, 등대지기, 바지선 선원

<제 외>

어로종사 선원(63)

#### 차. 대분류9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 91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청소, 경비, 계기 검침, 문서송달, 상품배달 및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 수행

<예 시>

가정부, 파출부, 가사소꿉대행원, 사무실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숙박시설 청소원, 병원 청소원, 음식점소 청소원, 세차원, 세탁 및 다림

질원, 빌딩관리원, 공동주택 관리인, 수위 및 경비원, 물품보관원, 집표원, 주차장관리원,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계기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쓰레기수거원, 거리미화원, 구두미화원, 심부름원, 물품분류원

<제 외>

건물외벽 청결원(71), 드라이크리닝기 조작원(82), 아파트 관리사무원(31), 아파트 관리소장(29), 신변경호원(44), 수렵감시관(44)

##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 영림, 어업에 관련된 업무 수행

<예 시>

과수원 단순노무자,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과실수확원, 목장 단순노무자, 낙농장 단순노무자, 임업 단순노무자, 어업 단순노무자

<제 외>

곡식작물 재배종사자(61), 가축사육 종사자(61), 수렵원(61), 수생동식물 양식원(63)

##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업과 관련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  
- 제품분류 및 간단한 구성품 수동조립

<예 시>

단순조립원, 수동포장원, 상표부착원, 제품운반원

<제 외>

차량 조립원(83), 포장기 조작원(82), 상표 및 라벨부착기 조작원(82)

##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광업, 건설 및 운수업과 관련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

<예 시>

광업 단순노무자, 교통정리원, 보선 단순노무자, 토공작업원, 건물건

설 단순노무자, 잡역부, 벽돌 운반인부, 부두하역원, 육상화물 하역원, 선박하역원, 화물운반원, 가구운반원, 지하철 푸시맨

<제 외>

광원(71), 채석원(71), 전통건물 건축원(71), 건설벽돌 조적원(71), 크레인운전원(84)

#### 카. 대분류A 군인

- 의무복무중인 사병을 제외하고 현재 군복무에 종사하여 민간고용이 자유롭지 못한 자를 말함
-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경찰, 세관원 및 무장 민간복무자,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

< 별첨 >

구분류대비 변경항목

구부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1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명칭변경
11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
12	법인관리자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
13	종합관리자	03	일반관리자	"
2	전문가	1	전문가	
21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11	과학 전문가	자연, 생명, 사회과학 통합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21211	보험계리사	16420	보험계리사	분류이동
21212	경영조사분석가	16506	경영조사분석가	"
22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생명과학11
221	생명과학 전문가	112	생명과학 전문가	
23	교육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24	기타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24196	특허대리인(사업서비스)	17131	특허대리인(법률)	분류이동
2444	사회과학 및 관련 전문가	113	사회과학 전문가	사회과학자와 서비스 분리
		172	사회서비스 전문가	"
24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1133	철학자, 언어학자 및 관련 전문가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분류이동

구부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1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2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31316	기타 사진가	23511	사진가	
		18314	사진작가	분류이동
32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321	생명과학 기술공 및 관련 준전문가	212	생명과학관련 기술종사자	분류이동
32113	박제사	41409	기타 장의 및 관련서비스 종사원	"
3223	식이요법가 및 영양사	1450	영양 전문가	"
32261	물리치료사 및 관련 준전문가	1440	치료 전문가	
		2431	안마사	
32261	물리치료사	14401	물리치료사	
32262	안마사	24310	안마사	
32263	정골요법사	-	-	삭제
32264	척추지압치료사	24310	안마사	
32265	정형기술공	74116	정형기구 제조 및 수리원	
32291	시각교정요법사	-	-	삭제
32292	언어교정요법사	14402	언어치료사	
		14403	작업치료사	
323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	143	간호 및 조산 준전문가	
33	교육 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33100	초등교육 준교사	15300	초등학교 교사	분류이동
		25110	대학교육 조교	신설
		25121	초등학교 보조교사	"
		25122	중등학교 보조교사	"

구분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332	학경전교육 준교사	154	유치원 교사	
333	특수교육 준교사	155	특수학교 교사	
33402	비행교관	15619	기타 직업교육 관련 강사	
33403	항해술교관	15619	기타 직업교육 관련 강사	
34	기타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관리, 법률·의료 및 관련사업 정부 준전문가
34220	통관대리인	26320	통관대리인	
		16517	관세사	분류이동
34323	보험사무원	31522	보험사무원	"
34330	부기원	31510	부기원	분류이동
34340	통계, 수학 및 관련 준전문가	21101	통계 및 수학 준전문가	분류이동
34391	정부집행공무원, 입법 및 고위정부공무원 제외	16110	정부정책 기획 및 집행전문가	신설
		29191	정부관리 준전문가	
343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관리 준전문가	16120	기업경영 행정 전문가	
		16130	일반행정 전문가	
		29199	그외 기타 관리 준전문가	
		29221	의무기록사	
		29229	기타 의료사무 준전문가	
		29291	감사 준전문가	
		29299	그외 기타 사업준전문가	
34510	경찰수사관	44101	경찰관	분류이동
34520	사립탐정	44409	그외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원	
3471	정식가 및 상업디자이너	1832	디자이너	
3472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아나운서	1842	프로그램 진행자	
-	-	213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구부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4	사무직원	3	사무 종사자	
41	일반 사무직원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41421	우편물 집배원	91311	우편물 집배원	
42	고객종사 사무직원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
4213	마권영업자 및 도박진행자	3214	복권판매 및 마권발매 종사자	"
4214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4154	도박진행자 및 대금업자	
42132	도박진행자	41541	도박진행자	
42141	전당업자	41542	전당업자 및 대금업자	
42142	대금업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41	대인서비스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51211	가사 근로자	91111	가사보조원	분류이동
-	-	91112	가사쇼핑 대행원	신설
51212	호텔 집사	02351	숙박업 운영부서 관리자	분류이동
51321	간병인	41121	간병인	
		24102	간호조무사	분류이동
		41123	치료사 보조원	
52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52	통신 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6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 종사자	

구부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63	어업 숙련 종사자	
61294	동물조련사	28320	동물조련사	분류이동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1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종사자	
71354	차량유리원	83110	자동차 조립원	
7142	차량도장원 및 관련 도장원	8224	차량도장기 조작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3	기계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7213	판금 근로자	8212	판금기 조작종사자	
7223	기계공구조정원 및 조정 조작원	8211	기계공구 조작종사자	
73	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업 기능 종사자	
73115	치아보철원 및 수리원	24212	치과기공사	
7345	제본원 및 관련 근로자	8252	제책용 기계조작 종사자	
7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4153	커피 및 차시음원	26264	음식로품 감정사	
74154	차시음원	26264	음식로품 감정사	
7416	담배가공원 및 담배제품 제조원	8284	담배제조기 조작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조 작 종사자	
8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82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83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1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111	식품행상인	5132	노점 및 이동판매 종사자	

구부호	항목명	신부호	항목명	비고
9112	비식품행상인	5132	노점 및 이동판매 종사자	
91131	방문외판원	51310	소매방문 판매원	
91132	전화외판원	52100	전화통신 판매원	
		52210	통신서비스 판매원	
		52220	통신 재판매원	
91522	호텔데스크 안내원	41302	숙박시설 시종원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92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 관련 단순노무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